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4. 4. 23.(화)
제416회 임시회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종갑 의원 등 7인

2. 발의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내 산업현장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함

4. 주요내용

-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(안 제4조)
-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명장 기술장려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숙련기술을

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장려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(2023. 11. 3.)하였고 이후 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면서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됨

나. 주요검토내용

-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(안 제4조)

<법무혁신담당관-9986(2023.8.11.)호 >

▶ “문화재”란 용어 → “국가유산” 또는 “문화유산” 등으로 개정 요청

-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정의 규정에 따라 명장의 경우 그 속련된 기술의 가치가 핵심 요소인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,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인 제4호의 “무형유산”에 해당함

- 명장 기술장려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(안 제6조)

※타 시도 조례 내용 현황(예산지원관련)

시도	조례 내용
서울	제6조(최고장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최고장인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충남	제8조(예우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충청남도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전북	제7조(예우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증서, 전북특별자치도명장패 등을 수여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인접 충청권(충남 1,200만원, 대전 1,500만원)과 재정자립도 유사 시도(경북 1,800만원, 제주 1,000만원)와 비교 시 낮은 수준으로 증액 필요성 있음
- 조례에 금액을 특정하는 방식보다 예산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정비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정의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성과 체계적 적합성이 있음
- 명장 기술장려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인바 조례 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, 타 시도 규정과 비교하여 판단해 볼 때,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